

공공디자인

인턴 채용

기관·기업

모집

2020. 7. 1 - 8. 31

문화체육관광부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0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2020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모집대상**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관, 기업, 협·단체

◆ 신청자격

- (필수) 최근 3년 이내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 조사, 분석, 디자인 개발 등을 수행한 기관·기업
- (필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기업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기업

**모집기간** 2020년 7월 1일(수) ~ 2020년 8월 31일(월) 18:00까지

※ 단, 지원금 소진시, 모집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시행기간** 모집일로부터 ~ 2020년 11월 30일(금)

2. 지원내용

**지원내용**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기업의 인턴십 인건비 지원

※ 선정기업에서 청년인턴 직접 채용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명, 총 3,300만원\* 까지 지원

\* 예시) 참여기업 청년인턴 5명 채용 및 4개월 인턴십 운영 시, 인턴지원금 최대 2,200만원 ( 월110만원 X4개월X5명),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1,100만원(220만원X5명)

※ 「2019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참여기업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금액

① e나라도움을 통한 청년 인턴 1인당 월 110만원\* 임금 지원

\* 1인당 월 110만원 : 인건비 90만원+사회보험비 기업부담금 20만원 포함

② 인턴 근무자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 지원 ※지원금 소진 시까지

**지원기간** 인턴 채용일\*로부터 3개월 ~ 4개월까지 지원

\* 참여기업 인턴십지원 협약체결일 이후 근로 체결 기준

지원조건

①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미취업 상태 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청년인턴 채용

◆ 인턴 채용 자격요건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제2018-05호)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 직무(그 외 관련 분야 기획 및 연구, 디자인, 설계 분야 포함)
-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불가),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재취업자 포함
-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자세한 내용은 5.유의사항 참조)

② 인턴채용 근로자에게 월 급여 180만원 \*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가입

\* 2020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급여 지급조건 준수

③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교육 학습(3차시) 필수 이수

3.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 적격 검토 시, 서류 보완 및 심의위원 검수 필요에 따라 별도의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시 개별 안내)

4. 신청방법

제출서류(.PDF) 이메일 제출 ( public@kcdf.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제출서류 ※ ①~④ 신청양식 불임

- ① 참여신청서 1부
- ②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실적 내역서 1부
- ③ 지원사업 참여동의 및 협약서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⑦ ~ ⑨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5. 유의사항

- 신청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턴 근로 이후라도 취소/환수할 수 있음
  - ◆ 참여기관·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및 단체
    - 인턴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및 임금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 ※ 예외사항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 해당 지원사업 참여 시, 1인당 월 지원금 110만원 중 4대 보험 기업부담금(월 20만원) 제외한 인건비(월 90만원)지원금 지급
    - 채용예정 인턴이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인턴 간의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별도 존재하는 경우
  - ◆ 청년인턴
    - 채용예정인 참여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채용기업 협약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1년 이내 인턴십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 생산, 회계, 경리, 경영 등)
-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10일 내에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 채용 인턴에게 성희롱방지 등 근로자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진흥원에 인턴 지원금 신청 시 월 1회 근무보고서 제출해야 함
-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교육 필수 이수,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 정산 등 협조
-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문의** 2020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운영사무국 02-398-7962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붙임** 1. 2020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모요강

2. 지원사업 신청 서식 4종